

# 대신 에버그린 이벤트드리븐 전문사모투자신탁 제1호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AG049 )

## 제1절 총 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①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9조의2에 따라 설정 또는 설립된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대신자산운용주식회사**와 신탁업자인 **삼성증권주식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보수 이외에 투자성과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하므로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투자신탁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③ 이 투자신탁은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수익자의 수를 49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법령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서 제출, 투자설명서·자산운용보고서 등 교부, 투자운용인력의 변경·환매연기·부실자산 상각 등 법령이 정하는 중요사실에 대한 수시공시, 기준가격의 일별공시, 회계감사, 신탁업자 운용행위감시 등 일반적인 투자자 보호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3.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4. "혼합자산투자기구"라 함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법 제29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한 받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5. "사모형"이라 함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9조제19항에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제한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6.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함은 법 시행령 제271조의2제1항에 의한 적격투자자(이하 "적격투자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7. "개방형"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8. "추가형"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9. "종류형"이라 함은 법 제231조 규정에 의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대신 에버그린 이벤트드리븐 전문사모투자신탁 제1호"라 한다.

-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3. 사모형
  4.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5. 개방형

6. 추가형

7. 종류형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종류별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Class A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으로, 가입제한 없음

2. Class C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으로, 건별 납입금액 50 억 이상 매입하는 투자자

3. Class C-I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으로, 건별 납입금액 100 억 원 이상 매입하는 전문투자자

4. Class C-S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으로,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원활한 운용규모 유지를 위하여 참여하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인정하는 투자자

5. Class C-F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으로,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2(투자신탁의 가입제한 등)**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49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자를 말한다.

1. 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수를 산출함에 있어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 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제1항에 따른 수익자를 말한다)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③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모의 방법으로 판매한다.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4조의2(해외보관대리인)** 신탁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업무

2. 제1호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

**제4조의3(전담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50조제1항제

3호에 따른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담중개업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1. 증권의 대차 또는 그 중개, 주선이나 대리업무
2.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보관 및 관리
3. 신용공여
4.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 체결업무
5. 집합투자재산의 매매거래에 대한 청산 및 결제업무
6.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 주선, 대리업무
7.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운용과 관련한 금융 및 재무 등에 대한 자문업무
9.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업무

**제4조의4(업무의 위탁)** ①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의 위탁에 따른 보수는 신탁업자와 업무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 보수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 이 신탁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때에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관련 법령이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로 한다.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25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0조좌로 한다.

**제 7 조(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내에서 추가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신탁금의 납입)**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6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좌수에 최초설정시 공고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④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 271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 제 2 절 수익증권 등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Class A 수익증권
2. Class C 수익증권
3. Class C-I 수익증권
4. Class C-S 수익증권
5. Class C-F 수익증권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 31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 309 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 1 항 각 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36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 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 ② 수익자는 그 수익권을 법시행령 제271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수익자는 그 수익증권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양도의 결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는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 ④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 ⑤ 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⑥ 수익증권의 양도시 양수인은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 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 10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 ⑧ 집합투자업자가 제 3 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 354 조 제 4 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2.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합병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제3절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자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 관리한다.

**제16조(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①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는 혼합자산투자신탁으로서 국내외 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며 주로 기업들의 다양한 영업활동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이벤트들에 투자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실행하는 이벤트드리븐전략을 통하여 장기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한다.

② 이 투자신탁이 주로 수행하는 전략인 이벤트드리븐전략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IPO(공모주)전략 : 신규 IPO종목 청약에 적극 참여하여 수익을 얻는 전략을 말한다. 또한 IPO 종목 상장 후 다양한 가격 변화와 IPO기업 내 숨어 있는 각종 Putback Option & Lock-Up 물량 해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저평가된 종목을 선별 매수하여 적정가치에 이르면 매도하여 이익을 얻는 전략을 기본 전략으로 수행한다.
2. 유무상 증자/감자 이용전략 : 기업이 유/무상증자, 유/무상감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금 조달시 주가는 크게 움직이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변동 상황을 투자에 적극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전략을 기본 전략으로 수행한다.
3. 자사주 매입/매도/소각 이용 전략 : 기업이 자사주 매입, 매도, 소각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재무활동을 펼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주식가격의 저평가 또는 고평가 등을 이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기본 전략으로 수행한다.
4. 메자닌(CB/BW/EB) 투자전략 : 기업이 사채나 증자 이외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을 발행하여 자금 조달시 해당 기업의 주가는 크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때 기업이 자신의 기업 가치에 비해 저평가 또는 고평가되는 현상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기본 전략으로 수행한다.
5. M&A 이용 전략 : 기업은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거나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 다양한 인수합병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해당 기업들의 주가도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기본전략으로 수행한다.
6. Spin-Off전략 : 기업들은 필요에 따라 사업부의 한 영역을 분할하여 신규 자회사를 만들거나 이를 상장시켜 새로운 비즈니스에 집중할 경우가 있다. 이때 신규 분할돼 상장거래되는 기업의 가치나 모회사의 가치가 크게 변동하게 되는데 이를 과학적 분석기법을 통하여 고평가 기업주식 매도, 저평가 기업주식 매수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전략을 기본 전략으로 수행한다.
7. 기업지배구조 변화 이용전략 : 대기업들의 순환출자 구조의 변화를 위한 법률 제정이나 규칙 및 국가의 전략적 선택에 의한 다양한 지배구조 변화 시도시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향

후 유불리에 의한 기대감으로 크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를 투자에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전략을 기본전략으로 수행한다.

8. 기타 전략 : 이외에도 기업오너의 횡령, 배임 등으로 인한 주가 변동을 적극 이용하거나 법률 및 규칙 등의 변화로 인한 피해기업과 수혜기업들이 발생하는 각종 기업관련 이벤트를 적극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전략을 기본 전략으로 수행한다.

③ 이 투자신탁은 주로 한국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에 주로 투자할 계획이나 경우에 따라서 운용역의 판단으로 해외에서 거래되는 자산에 대하여 투자할 수 있다.

④ 이상에서 밝힌 주요 투자전략에도 불구하고 운용역의 판단으로 시장상황 및 경제환경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순투자비중을 0(零, zero) 또는 그 이하로 상당기간 유지할 수도 있다.

**제16조의 2(자산운용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을 초과하는 행위

3.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재산 총액의 100분의 400을 초과하는 행위

4.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및 담보목적물의 가액의 총액이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행위

5. 집합투자재산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 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이 집합투자기구가 합병,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뚜렷하게 떨어져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그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및 집합투자기구가 합병·해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제4절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17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8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
  2.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 ②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 ④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268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절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19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본 수익증권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투자는 언제든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투자는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을 위한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한다.

**제20조(판매가격)**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25조 제2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5 시 30 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제 4 영업일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 25 조 제 2 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제21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인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

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 제22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15시 30분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2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 ②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5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6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 ③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성과보수금액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 ④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23조(환매연기)**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 ③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
    -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 제3항에서 정한 사항
- ④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

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에 해당하는 환매청구 기준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제6절 투자신탁재산 평가 및 회계

**제24조(투자신탁재산 평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기준가격 산정 )**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산정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산정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에 비치하고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한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④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시 제32조의2에 의한 성과보수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26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27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전에 수익자 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다.

- 제28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 제29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성과보수금액 및 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제10조 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제30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자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31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 ②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제7절 보수 및 수수료 등

- 제32조(보수)**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 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은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1. Class A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5.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8.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 2. Class C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5.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00 <2015.03.26. 변경>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 3. Class C-I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5.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 4. Class C-S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5.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 5. Class C-F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5.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제32조의2 (성과보수)**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보수와는 별도로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따른 성과보수를 취득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판매사별·계좌별로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된 성과보수를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성과보수 인출시점에 취득한다.

③ 성과보수는 판매사별·계좌별로 그 수익증권 보유기간의 성과에 대하여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또한 동일한 판매사의 동일한 계좌가 투자한 총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④ 제1항의 성과보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성과보수계산기간 :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가. 수익자의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 말일까지

나. 가목에 따른 회계연도 이후에는 회계연도 초일부터 매 회계연도 말일까지

다.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회계연도 초일부터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 적용일까지. 다만, 가목에 따른 기간 이전에 환매하는 경우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로 한다.

2. 성과보수 : 매 성과보수계산기간 말일에 다음 기준으로 계산한다.

가. 성과보수금액 : Max[(투자신탁 평가액 – High Water Mark 평가액)X 성과보수율,0]

나. 성과보수율 : 10%

다. 투자신탁 평가액

(1) 이익분배전 보유 좌수 X (성과보수 계산일 현재의 1좌당 결산후 기준가격 + 1좌당 세전 이익분배금)

(2) 일부 및 전부 해지시에는 투자신탁 환매좌수 X 1좌당 환매기준가격

라. High Water Mark 평가액

(1) 직전 이익분배금 지급일의 '결산후 취득가액' + 직전 결산일 이후 추가 취득가액의 합산액 – 직전 결산일 이후 일부 해지 좌수에 해당하여 차감된 '환매시 High Water Mark 평가액'의 합산액

(2) 성과보수 계산기간 중에 이익분배금 지급이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투자시 취득가액 + 추가 취득가액의 합산액 – 일부해지 좌수에 해당하여 차감된 '환매시 High Water Mark 평가액'의 합산액

(3) 일부 및 전부 해지시에는 환매기준가격 적용일 전일의 High Water Mark 평가액 X 환매 좌수 / 총좌수

\* 결산후 취득가액 =  $\text{Max}[\text{결산전 High Water Mark 평가액}, \text{결산일 당일의 평가액}]$

\*\* 결산일 당일의 평가액: 결산후 기준가격 X 재투자전 좌수 총액 + 세후이익분배금(성과보수 차감후 기준) 다만, 이익분배금 지급이 유보되는 경우 및 성과보수계산금액이 이익분배금보다 큰 경우, 성과보수 위와 같이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전 High Water Mark 평가액으로 함

3. 지급방법 및 시기

가. 성과보수는 다음에 정한 날에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이익분배금 지급일

(2) 투자신탁의 환매시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 계산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에 인출함)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상환금 지급일)

⑤ 이 투자신탁은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더욱이 성과보수를 성과보수 인출시점에 계산하여 인출하므로 투자자는 기준가격으로 예상한 운용성과 보다 미달하는 성과를 실현할 수 있다.

⑥ 이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운용전문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는 다음과 같다.

## 1. 운용전문인력의 경력사항

성명 (직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김종언 (본부장) 책임운용역	- 2015.01 ~ 현재 대신자산운용 리서치운용본부 - 2011.04 ~ 2012.07 유리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 2010.03 ~ 2011.04 엑센추어코리아 SCM Management - 서울대학교(학사, 경제학전공)

## 2. 운용성과 (2019.03.21 기준)

집합투자기구명	운용역	설정일	운용 개시일	설정 규모 (억원)	운용기간 수익률(%)
대신 아시아컨슈머 증권투자신탁[주식]	김종언	2015.03.09	2015.03.09	70 억	15.91%
대신 성장 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주식]	김종언	2013.06.24	2016.03.28	146 억	6.68%

\*해당펀드는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

**제33조 (판매수수료)** ①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Class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 이내

③ Class A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에는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2 항 제 1 호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정해진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제34조(환매수수료)** 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5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② 환매수수료는 환매대금 또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 1. 90일 미만 : 이익금의 50%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6조 단서에 따른 신탁계약 변경시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한다.

**제35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 한함)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6.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7.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8. 전담중개업자 관련 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1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비용으로 특정 종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5조의2(전담중개업자 관련비용)** 제35조제2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전담중개업자 관련 비용"이라 함은 제4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비용을 말한다.

**제35조의3(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 제35조제2항제9호에서 규정하는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건당 결재비용(transaction fee)
2. 보관비용(safe-keeping fee)
3. 기타 부수비용(out-of-pocket expenses: physical registration, DR conversion, tax reclaim, income collection 등)

## 제8절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36조(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37조 제2항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37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 184 조제 4 항, 법 제 246 조제 1 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③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2.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38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자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자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3.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제 39 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38 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규정 제 7-11 조제 1 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38 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챈무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챈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챈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 제9절 보 칙

**제40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1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42조(손해배상책임)**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 · 일반사무관리회사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 258 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 263 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43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44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관할법원)**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 3 조제 1 항제 15 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3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3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운용인력 변경 및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변경>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4년 2월 7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호는 2014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성과보수금액 산정방법 변경[Hurdle Rate(5%) 삭제 및 성과보수율 10% 적용, 설정/환매기준시각 변경(17시->15시), 설정/환매 제한 삭제, 환매시 기준가격 적용일 및 환매대금지급일 단축, 환매수수료 인하>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4년 3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집합투자기구 명칭변경: 대신 에버그린 이벤트드리븐 전문사모투자신탁 제1호-> 대신 에버그린 이벤트드리븐 전문사모투자신탁 제1호>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4년 5월 23일 부터 시행한다.<운용전문인력 변경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4년 6월 30일 부터 시행한다.<운용전문인력 변경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5년 3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클래스(C) 판매회사보수 인하>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6년 6월 17일 부터 시행한다.<운용전문인력 변경>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증권시장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판매, 환매 기준시점 변경(15시->15시30분)>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집합투자업자보수율 변경>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8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책임운용역 추가>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9년 3월 25일 부터 시행한다.<책임운용역 변경, 부책임운용역 삭제>

집합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1길 24  
투자      대신자산운용주식회사  
업자      대표이사 구희진

신탁  
업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삼성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석훈